

2-⑥

이노테크 기업 육성

1. 사업개요

사업목적

- 강소특구 내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성·운영을 통해 구성원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,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
- 지역주도형 특화분야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등 역량 강화 및 공공기술 연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기반기업으로 육성

사업내용

- 강소특구 내 혁신주체, 특화기술·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·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사업화 지원 연계 활용
- 집중 특화분야 기반의 기술역량 강화, 경영 역량 강화, 특성화 클러스터 육성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

2. 지원내용

예산규모: 총 10,300백만원

○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(안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안산	김해	진주	창원	포항	청주	합계
예산	1,700	1,800	1,700	1,700	1,700	1,700	10,300

지원내용

- 강소특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화분야 산업을 육성하고, 강소특구 내 기업 수요를 반영, 시장 진출을 위한 다방면 기업 지원

구 분	세 부 내 용	
지원금액	각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참조	
지원기간	안산, 김해, 진주, 창원, 포항, 청주	2025. 03. 10. ~ 2026. 03. 09.(12개월)
지원내용	집중 특화분야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및 산·학·연·관 네트워크 구성·운영	
기타사항 (중요)	① 지원기간(협약기간)은 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관련법령*에 따라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'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' 수 제한 기준(3책 5공) 예외 적용 *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제2항제3호,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9조제2항	

지원대상

○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

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이 해당 사업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특화 개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·운영을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며, 공동연구 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

○ 이노테크 기업 육성사업의 수혜대상

수혜대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강소특구 내 기업강소특구 소재 기초지자체 기업 중 ①특화분야 기업, ②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, ③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

추진방식

○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 또는 분야별 전문가 활용 지원

세부 사업내용

- 강소특구 내 혁신주체, 특화기술·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·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사업화 지원 연계 활용
- 기업 수요 기반의 스케일업 지원 등 기술·경영 역량강화, 특성화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주도형 이노테크 기업 육성 지원

< 이노테크 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지원 분야 범주구분(안) >

구분	스케일업 지원		특성화 클러스터 육성
	기술역량 강화	경영역량 강화	
추진 내용	기술개선, 시험인증, 시제품 제작 지원 등	컨설팅, 마케팅, 판로개척, 해외진출 지원 등	인재양성, 커뮤니티운영, DB구축 등

* 각 특구별 필요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에서 추가·변경 가능, 지원분야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기술핵심기관의 사업공고에 명시하여 추진

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

○ (기관부담연구개발비) 해당사항 없음

중소·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

-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 -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

- 중소·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,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
-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 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- 지식서비스분야, S/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-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: 해당사항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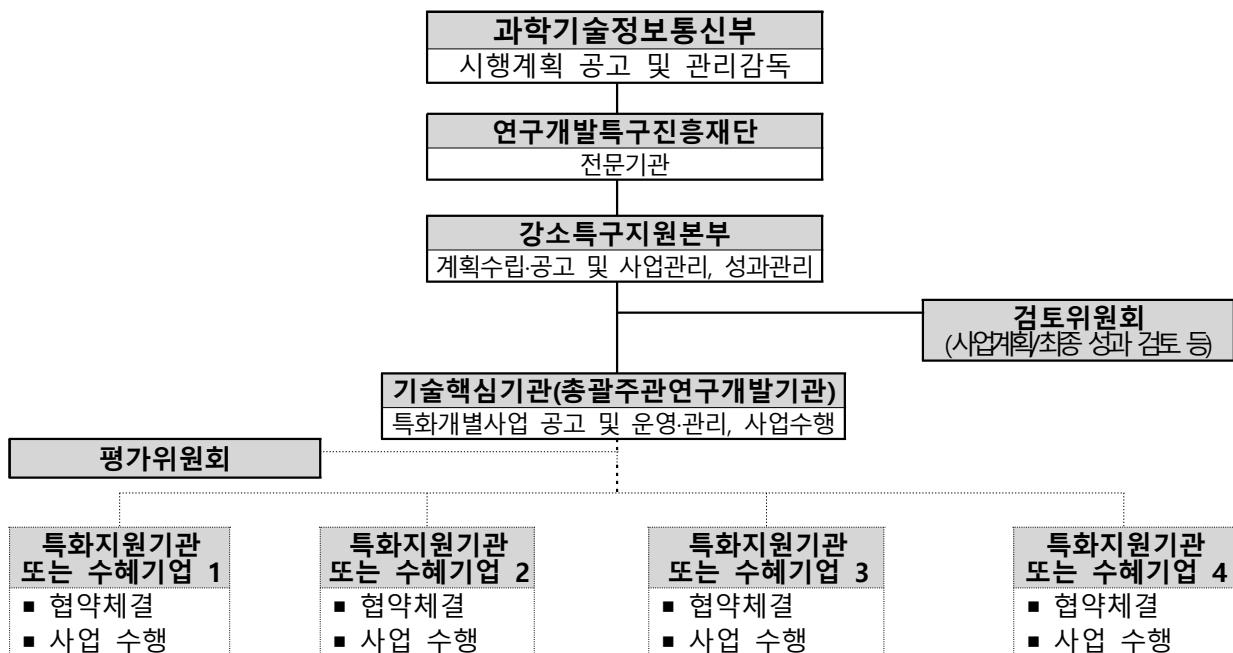
3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□ 사업 추진체계

-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* 후 사업 수행하며, 기술핵심기관에서 특화 개별사업의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선정·지원**

* 특화개별사업 추진 시 기술핵심기관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, 강소특구육성사업 중 특화개별사업을 기획, 평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함

**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에서 특화개별사업의 세부 지원내용 별도 공고 후 추진



□ 추진절차

- 안산, 김해, 진주, 창원, 포항, 청주



*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지원기간 등 조정 가능

-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: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'21년도~'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(국세청(홈텍스)발급) 및 회계감사보고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접수마감일 기준 '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('23년도)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- ※ 단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·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,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
- ※ 검토위원회 이후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4. 신청방법 및 절차

- 사업공고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t.go.kr)
 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
 - 연구개발특구포털(www.innopolis.or.kr)
 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.go.kr)
- 신청방법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.go.kr)을 통한 신청

신청 시 주의사항

- **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**
-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(신청항목)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'제출완료'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(과제)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.
- 전산 등록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
-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등록 제출
 ※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,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
-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(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)
-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,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

제출서류: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(PDF, 한글, 엑셀)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

번호	서 류 명	서식	제출대상			파일형식
			주관	공동	위탁	
1 (필수)	연구개발계획서	서식 1호	○	-	-	HWP
2 (필수)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서식 2호	○	○	○	PDF
3 (필수)	사업자등록증	-	○	○	○	PDF
4 (필수)	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	서식 3호	○	○	○	PDF
5 (필수)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 4호	○	○	○	PDF
6 (필수)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	서식 5호	○	○	○	PDF
7 (필수)	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서식 6호	○	○	○	PDF
8 (필수)	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('21~'23) 기준 국세청 흠택스 발급분	-	○	○	○	PDF
9 (필수)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○	○	○	PDF
10	실적증명서	서식 7호	-	○	○	PDF
11	기관(기업) 소개자료	-	-	○	○	PDF
12	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	서식 8호	해당시	-	-	PDF
13 (필수)	참여연구원 정보	서식 9호	○	○	○	엑셀(Excel)
14	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¹⁾ ※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 기간이 유효해야 함	-	-	○	○	PDF
15	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	서식 10호	-	해당시	해당시	PDF
16	전문연구사업자신고증(원본대조필)	-	-	해당시	해당시	PDF

1) 확인서 발급사이트: 중소기업확인서(<http://sminfo.mss.go.kr>), 중견기업확인서(<https://mme.or.kr>)

※ 주의사항: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, 제출서류 내
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뒷자리) 삭제 후 제출

5. 사업 관련 문의

문의처

- 사업총괄문의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(@innopolis.or.kr)

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	전자메일	담당 특구
강소특구육성1팀	장성혁	031-400-4835	jsh3940	안산
	허익범	031-400-4833	ikek128	청주
강소특구육성2팀	윤지인	042-865-7093	yjiin09	김해, 창원, 진주, 포항

- 세부 사업 수행 관련 문의: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

강소특구	기술핵심기관	담당자	연락처	전자메일
안산	한양대학교 에리카	곽태영	031-400-4983	khsty19@hanyang.ac.kr
김해	인제대학교	강하얀	055-323-1122	khy320@inje.ac.kr
진주	경상국립대학교	이수진	055-772-4846	230626@gnu.ac.kr
창원	한국전기연구원	이정민	055-280-1063	jmleee@keri.re.kr
포항	포항공과대학교, 포항산업과학연구원	박성조	054-279-9307	psj2686@postech.ac.kr
청주	충북대학교	정재훈	043-249-1471	jh4885@cbnu.ac.kr

6. 기타사항
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·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협약시 별도로 정할 예정
- 유의사항

공통사항
가. 지원금액 및 지원(협약)기간은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나.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(사무실, 휴대전화, 이메일 등)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
다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라.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마.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바.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

□ 관련법령 및 규정
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 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○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관련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

- 특화개별사업에 대한 지원대상, 지원범위, 지원규모, 추진절차 등은 기술핵심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
- 특화개별사업의 협약기간은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기간 이내로 함
- 기술핵심기관 간접비는 기술핵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최대 10%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
- 영리법인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음
- 본 사업은 2025년도 지역과학기술혁신 및 산학연협력 관련 사업 종합 시행계획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 개발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함
- 협약체결 시,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특구재단이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함
 -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차년도 동일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협약 종료 월에 최종평가를 실시